

#### [서식 예]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

# 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###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 영업 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영업 정지 처분(이하 "이 사건 처분"이라 합니다)을 하였습니다.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□□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2호, 제21조의2 건설업면허등의 대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위 처분을하였습니다.
- 2. 그러나 원고는 소외 김□□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



한 일이 없습니다. 그러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내용 및 절차상 흠이 있는 위법 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.

# 첨 부 서 류

1. 소장부본1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. 납부서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## ○○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및 기 간 ·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, 38조)

- 1.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무효 등확인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, 38조)

- 1.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. 다만 처분의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. 따라서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제1항 단서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